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상반기 모집 공고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지원 제도란?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2·3급)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사후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

〈신청접수〉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접수 시, 동시 신청 및 서류 제출

〈서류 검토·보완〉

증빙서류 적격 검토

〈교육수강〉

기본·실기과정 수강
자격취득

〈사후환급〉

자격 취득자 대상
교육비 및 평가수수료
환급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 ① 저소득층('24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② 미취업청년(만19세~39세 미취업자)
- ③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후 위탁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 청년)
- ④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기관 당 1명)
(기관 내 환경교육사 미보유, '24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시)
- ⑤ 일반인

신청기간

2급: '24.2.14.(수)~2.26.(월)

3급: '24.2.20.(화)~2.23.(금)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접수 일정과 동일

신청방법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사이트(www.keep.go.kr/license)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 증빙서류 동시 제출

결과발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 최종 선정 후 개별연락

환급안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 교육비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요청 안내 예정

* 중도포기, 불합격 등 '24년 환경교육사 자격 미취득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자격취득 지원비

* 대상 ①~④ 100% 지원, 대상 ⑤ 50% 지원

* 교통비, 식비 등은 미지원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발급

공통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① 저소득층(3개 중 택 1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② 미취업청년

-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③ 자립준비청년

- 보호 종료 확인서

④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 지정 전: 법인등록증, 계획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지정 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재직증명서

⑤ 일반인: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대상 및 제출서류 등 공고문 확인 필수

문의처

이메일 문의: sye23@keci.or.kr



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